

『嶺南學』 연구윤리규정

2008년 5월 20일 제정

2019년 6월 13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嶺南學』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嶺南學』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세부활동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 『嶺南學』의 연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

제4조 (연구자의 정직성 의무)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를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 (표절 금지)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제6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의 금지)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의 연구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연구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7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금지)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말아야 한다.

제8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의무)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註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논문 수정의 의무) 연구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의무

제10조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嶺南學』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11조 (논문집의 공정 편집) 편집위원은 『嶺南學』에 투고된 논문을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개인적 친분 등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13조 (비밀 유지의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의무

제14조 (성실 심사) 심사위원은 『嶺南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 심사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5조 (공정 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학술적 신념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6조 (평가근거의 명시) 심사위원은 평가 의견서에서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는 투고자 및 심사자의 인적 사항,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 논문 심사의 결과 등이 포함된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8조 (윤리규정 서약) 『嶺南學』에 투고하려는 연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의 강제성)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22조 (비밀 유지)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심사 절차) 위원회는 보고(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투고자의 논문이 '제2장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를 건의한다.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을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문서(전자 문서 포함)로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 (제재)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는 연구원 홈페이지 및 『嶺南學』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공포한다. 『嶺南學』 전자판 및 연구원 홈페이지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연구원의 학술 활동 및 『嶺南學』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제25조 (연구윤리 교육) 위원회는 연구원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연구윤리의 교육은 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석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내용은 자료집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제작한다.

제26조 (규정의 개정)

1. 위원장 또는 윤리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다.
2. 재적 윤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7조 (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북대학교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嶺南學』 제13호가 간행되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